

**음주운전 징계기준**(제2조제1호가목 관련)

음주운전 유형		처리기준	비고
최초 음주운전	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미만	정직-감봉	“음주운전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,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.
	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	강등-정직	
2회 음주운전		파면-강등	
3회 이상 음주운전		파면-해임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		강등-정직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		파면-강등	
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	해임-정직	
	사망사고	파면-해임	
	사고 후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	해임-정직
		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	파면-해임